

노후복지연금보험 1종(적립형)보통보험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 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 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등급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계약후 만 5년 이후 제2보험기간의 연금지급개시기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단, 연금지급개시기는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단, 제2보험기간중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시는 제외)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3 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5 조의 2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급여금과 그때 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

2. 제1보험기간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급여금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

3. 제1보험기간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4. 제2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 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의 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하여 2 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애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애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애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1호 이외의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생존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생존연금 지급개시일에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준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는 제외)
5.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6.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4 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 15 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1.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2조(약관대출)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 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제 16 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연금,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8 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급여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일로 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이 1년미만은 7.5%, 2년미만은 정기예금 이율, 3년미만은 『정기예금이율+0.5%』, 4년미만은 『정기예금이율+1.0%』, 5년미만은 『정기예금이율+1.5%』의 이율을 적용하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 ⑤ 회사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 ⑥ 생존연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9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8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 또는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연금의 지급개시전에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0 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 21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생존연금의 지급개시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에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22 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 22 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 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
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 26 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7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보장기간	구 분	지 급 액															
제1보험기간중	책임준비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정기예금이율에 연동한 이율(정기예금이율+2.0%)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															
	사망급여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table><tr><th>구분</th><th>월 보 험 료</th><th>보장금액</th></tr><tr><td>1형</td><td>2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td><td>300만원</td></tr><tr><td>2형</td><td>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td><td>250만원</td></tr><tr><td>3형</td><td>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td><td>200만원</td></tr><tr><td>4형</td><td>5만원</td><td>150만원</td></tr></table>	구분	월 보 험 료	보장금액	1형	2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00만원	2형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50만원	3형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00만원	4형	5만원	150만원
	구분	월 보 험 료	보장금액														
	1형	2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00만원														
	2형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50만원														
3형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00만원															
4형	5만원	150만원															
재해사망급여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5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table><tr><th>장해등급</th><th>제2급</th><th>제3급</th><th>제4급</th><th>제5급</th><th>제6급</th></tr><tr><td>지급액</td><td>350만원</td><td>250만원</td><td>150만원</td><td>75만원</td><td>50만원</td></tr></table>		장해등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지급액	350만원	250만원	150만원	75만원	50만원			
장해등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지급액	350만원	250만원	150만원	75만원	50만원												
제2보험기간중	생존 연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4호)	1.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2.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3. 상속연금형 책임준비금을 『정기예금 이율+2.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단, 사망시에는 사망지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다만, 1.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의 보증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2.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 15회, 20회 각각의 보증지급 기간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3. 보증지급 기간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율+2.0%』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리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5. 정기예금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부요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철도사고	E 800-E 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 810-E 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 820-E 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E 826-E 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 830-E 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 840-E 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E 846-E 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 850-E 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 860-E 869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 870-E 876
11. 불의의 추락	E 880-E 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 890-E 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 900-E 909 (276.5)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는 제외한다.	E 910-E 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 916-E 928 (E 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 930-E 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 960-E 969
18. 법적 개입 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E 970-E 978 (E 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 980-E 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 990-E 999
21.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 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헤르츠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frac{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 지절간 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말절골 (끝에서 첫째부분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 관절 (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부분뼈)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 (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 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첫째 발가락은 지절간 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1, 2, 3,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전기납,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8.5%

경과기간	매월 5만원 납입시		매월 10만원 납입시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개월	50,000	0	100,000	0
2개월	100,000	0	200,000	0
3개월	150,000	35,613	300,000	83,375
6개월	300,000	173,644	600,000	371,813
1년	600,000	459,758	1,200,000	969,725
3년	1,800,000	1,747,181	3,600,000	3,660,612
5년	3,000,000	3,362,700	6,000,000	7,038,209
7년	4,200,000	5,307,290	8,400,000	11,103,315
10년	6,000,000	9,058,973	12,000,000	18,946,092
15년	9,000,000	18,443,281	18,000,000	38,563,697
20년	12,000,000	33,903,427	24,000,000	70,882,656

단, 상기 예시금액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2%』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되었을 때
2.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과 상이할 때

<이 특약의 약관은 특약 가입자에게 본인형, 배우자형, 가족형중 본인형 약관의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재해사망 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가족형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에서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배우자형에서는 제2항 제1호에 정한 자로, 가족형에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자(이하 “배우자형, 가족형의 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제1조 제1항에서 선택한 형에 따라 본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 미혼 자녀

제 3 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체결후 제2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보험금 지급 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조건에 따라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을 때
 2. 보험기간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②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④ 배우자형 또는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년도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만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에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제7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는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에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구 분	피보험자	지급사유	지급액
본인형	본 인	재해 사망 및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quad 2) \quad \underline{\hspace{2cm}}$$

$$2(\quad) \quad 1 (\quad)$$

(별표 3)

장애등급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 등급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ㅇ)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이 특약의 약관은 특약 가입자에게 개인계약, 부부계약 중 개인계약 약관의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암사망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1년만기 최초계약의 경우 1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책임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개월(1년만기 최초계약의 경우 1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한 자를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주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를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합니다.

제 3 조 (종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

- ①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계약의 경우에 이후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이 특약의 계약일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무효)

- ① 계약일 이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이전의 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암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1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oal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에 정한 피보험자에게 특약의 보험기간안에 다음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명 칭	지 급 사 유	지급액(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개 인 계 약
암사망 보험금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 1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주피보험자 : 1,000만원 (단, 65세이후 500만원)

- ②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후에 암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 7 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8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9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10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사망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2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1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제6조 제1항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 보험금 또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특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해지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제 13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에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 제9회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 류 번 호
1.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140~149
2. 소화기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150~159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160~165
4. 뼈, 결합조직, 피부 및 유방의 악성신생물	170~175
5. 비뇨생식기의 악성신생물	179~189
6.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90~199
7. 림프조직 및 조혈조직의 악성신생물	200~208

제10회 이후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2>

해약환급금예시표

보 험 가 입 액 : 10만

가 입 연 령 : 40세

보 험 기 간 : 10년

납입방법 : 전기월납

개인계약

구분 경과기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년	180	0	120	0
3 년	540	141	360	43
5 년	900	248	600	117
10년	1,800	0	1,200	0

[이 특약의 약관은 특약 가입자에게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중 본인형(제1형) 약관의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입원특약 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부부형, 가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 및 가족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부부형의 경우 제2항 제1호, 가족형의 경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 22세이하의 미혼자녀
-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상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보험금 지급 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별표 2 (질병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 1의 지급조건 중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제1형 내지 제5형의 경우에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제6형 및 제7형의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4)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별표 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6)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제5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에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예시표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
 보 험 기 간: 20년 만기
 가 입 연 령: 40세
 납입방법: 전기월납
 3일초과 입원시 보장의 경우

남자

구 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본인형	납입보험료		372	1,116	1,860	2,604	3,720	5,580	7,440
	해약환급금		95	269	418	538	657	587	0

여자

구 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본인형	납입보험료		372	1,116	1,860	2,604	3,720	5,580	7,440
	해약환급금		98	276	428	551	670	592	0

<별표 1>

보험금의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조 건	지 급 액
		본 인 형
제 1 형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1/1000 해당액

〈별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분 류 항 목	국제기본 분류번호
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001~139
II. 신생물	140~239
III.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	240~279
IV.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280~289
VI.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320~389
VII. 순환기계의 질환	390~459
VIII. 호흡기계의 질환	460~519
IX. 소화기계의 질환	520~579
X.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580~629
XI. 임신, 출산 및 산욕의 합병증	630~676
X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680~709
X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710~739
XV. 주산기에 관련된 일정한 병태	760~779
XVI.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780~799
XVII. 손상 및 중독	800~999
—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보조분류	E800~E999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주) 다음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_____

1 ()

2()

(3) _____

3()

노후복지연금보험2종(거치형)보통보험 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계약후 만 3년 이후 제2보험기간의 연금지급개시기에 피보험자 살아있을 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선택한 연금지급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단, 연금지급개시기는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단, 제2보험기간중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시는 제외)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5 조의 2(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무효)

- ①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

-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 급여금과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일시에 지급
 2. 제1보험기간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3. 제2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 되는 날 현재의 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⑥ 제5항에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의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⑧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생존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생존연금 지급개시일에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전쟁, 기타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 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6.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행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4 조 (보험금 등 청구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연금, 급여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등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은 7.5%, 2년 미만은 「정기예금이율」, 3년 미만은 「정기예금이율+1.5%」의 이율을 적용하며, 정기예금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별표 4 “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생존연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5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7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계약자 또는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연금의 지급개시전에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 또는 중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또는 중액시킬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보험금등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17 조의 2(계약연령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 ②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 1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생존연금의 지급개시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에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19 조 (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 19 조의 2(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0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뒷면에 기재,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 23 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4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보장기간	구 분	지 급 액																	
제 1 보험 기 간 중	책 입 준 비 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정기에금이율에 연동한 이율 (정기에금이율+2.0%)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약에 의하여 부리 적절한 금액																	
	사 망 급 여 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납입보험료의 10% 해당액																	
	재 해 장 애 급 여 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table><tr><td>장애등급</td><td>2급</td><td>3급</td><td>4급</td><td>5급</td><td>6급</td></tr><tr><td>지 급 액</td><td colspan="5">(납입보험료의)</td></tr><tr><td></td><td>7%</td><td>5%</td><td>3%</td><td>1.5%</td><td>1%</td></tr></table>	장애등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 급 액	(납입보험료의)						7%	5%	3%	1.5%
장애등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 급 액	(납입보험료의)																		
	7%	5%	3%	1.5%	1%														
제 2 보험 기 간 중	생 존 연 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1.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 금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2.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지급 3. 상속연금형 책임준비금을 정기에금이율+2.0%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단, 사망시 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다만, 1.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의 보증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2.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 15회, 20회 각각의 보증지급기간안에 사
망시에는 각각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3. 보증지급기간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정기에금이율+2.0%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부리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 _____

2() 1 () .

(3) _____

() 1 ()

3

(별표 4)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일시납보험료 1,000만원,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8.5%)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 개 월	10,000,000	9,569,438
2 개 월	10,000,000	9,628,875
3 개 월	10,000,000	9,688,313
6 개 월	10,000,000	9,866,625
1 년	10,000,000	10,268,350
3 년	10,000,000	12,664,901
5 년	10,000,000	15,358,911
7 년	10,000,000	18,648,364
10 년	10,000,000	24,994,680
15 년	10,000,000	40,869,097
20 년	10,000,000	67,021,353

단, 상기예시금액은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2%」 기준이므로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의 변동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